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 및 구매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을 회원사에 도움을 주고자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 편집자주 -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 ; 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의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이하 "세부심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대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적격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인 제조입찰 : [별표 1]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으로서 "1호"에서 정한 이외의 입찰 : [별표 2]
- ② 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한도를 1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기준) 평가에 따른 기간계산 기준 일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기간계산 기준일

납품이행능력, 신인도 등의 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법령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일 전일을 기준일로 한다. 단, 결격사유인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실적, 재무제표 등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일 전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4. 업종평균율의 적용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중 중분류 업종(종합)의 자료를 적용하며, 업종은 심사대상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에 등록된 업종이 속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업종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가 여러 종류의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높은 업종을 해당업종으로 본다.

제5조 (결격사유 의 심사) ①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격여부를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로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또는 출석발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 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제출서류 등) ①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한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서식)
3.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서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
4. 재무제표 1부
5.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서식 참조)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적격심사의 면제를 신청하는 심사대상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한 5일 이내에 제1항 제1호 및 제8조 제1항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4호의 재무제표(제조능력과 재무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 포함)는 최근

1회계년도의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새로이 설립된 업체나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를 한 업체의 경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 : 최초결산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경영상태를 평가
2. 합병, 분할된 업체 및 사업 양수도를 한 업체의 경우 : 합병, 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 양수도에 따른 신고 수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에 의하여 경영상태를 평가

④ 제3항에 의한 결산서 제출시에는 동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서(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적어도 동법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반기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것에 한함)나 법인세법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공인회계사법 제2조 2호 및 세무사법 제2조 7호에 의하여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하며, 국외소재 업체의 경우는 국제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각종 서류는 입찰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7조 (낙찰자 결정) ①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85점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 가



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적격심사 면제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심사대상자로서 [별표1] 또는 [별표2]의 IV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적격심사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격심사를 하지 아니 하고 그 사실여부만을 확인하여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최근 3년이내에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시행령 제42조 제2항 단서의 공공기관에 당해 입찰 추정가격 이상 또는 동일 수량 이상을 납품한 실적이 있는 경우(단일 계약건에 한함)

2. 1호의 동일수량의 실적에 의한 적격심사 면제는 물품의 성질상 동일물품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소정의 기한내에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적격심사를 하여야 한다.

1.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대비 100분의 80% 이하인 경우

2. 최근 2년이내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별표 1]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 관련)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1. 이행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	
	2. 기술능력	가. 기계장치비율 나. 연구개발비율	20	
	3. 재무상태	가. 부채비율 나. 유동비율 다. 매출액 순이익율 라. 총자산 회전율	40	

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계약담당공무원이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기타사항) 이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등 관련 회계예규와 기타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1. 이 세부심사기준은 2000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한 물품의 낙찰자 선정에 적용한다.

2. 조달청 공고 제2000-26호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세부기준('00. 3. 4)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3. 신인도분야의 계약질서 준수정도 "다"항 "구매자 금융이용실적"의 평가는 2001. 1.1부터 적용 시행한다.

※ [주]

- ①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등이 당해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이고 유사물품이란 당해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성능, 품질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 ② 심사항목 “가”와 “나”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부조달협정 적용을 받지않는 구매입찰에서 최저투찰자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또는 유사물품으로서 입찰공고시정한 물품에 대한 조달청 선정 우수제품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서 KT, NT, EM, IT, GQ, GR, 특히, 실용신안, 전력발전설신기술을 보유한 경우 실적 유무에 관계없이 최고점으로 평가한다(유효기간내에 한함).
- ③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당해물품을 국

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제2항 단서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붙임 서식 3)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물품의 세금계산서사본을 실적증명서(붙임서식 3)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한다.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서(붙임 서식 3)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실적은 매회별 이행 예정량중 최대량으로 평가하며, 입찰공고시 명시된 금액 이상으로 한다.
- ⑤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별표 1-2]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2. 제조능력 : 배점한도 2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최근년도 기계장치비율 (기계장치비/매출액)	업종평균율에 대한당해업체 기계장치비율	15	A. 100% 이상	15
			B. 70% 이상-100% 미만	12
			C. 40% 이상-70% 미만	9
			D. 10% 이상-40% 미만	6
나. 최근년도 연구개발비율(연구개발비/매출액)	업종평균율에 대한 당해업체 연구개발비율	5	A. 100% 이상	5
			B. 70% 이상-100% 미만	4
			C. 40% 이상-70% 미만	3
			D. 10% 이상-40% 미만	2



※ [주]

- ① 업종평균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종합)를 적용한다
- ②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를 적용한다
- ③ 기계장치비 및 연구개발비는 최근 1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잔액금액을 적용하며, 매출액은 동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적용한다. 다만, 대차대조표상 연구개발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으나 손익계산서 또는 제조원가명세서상에 연구개발비(경상개발비, 연구비)가 계상되어 있으면 그 금액을 합산 대차대조표상의 잔액금액으로 같음

할 수 있다.

- ④ ③항의 경우 기업전체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개 업종을 겸영하여 업종별 재무제표가 작성되어 제출되는 경우에는 입찰대상물품의 해당업종 자료를 적용할 수 있다. 이경우에도 업종평균율은 ① 및 ②항을 적용 한다
- ⑤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항목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분담비율을 곱한후 이를 각각 분모, 분자별로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별표 1-3]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입찰>

3. 재무상태 : 배점한도 4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 점	등 급	평 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평균율에 대한 당해업체 부채비율	12	A. 40% 미만 B. 40% 이상-80% 미만 C. 80% 이상-120% 미만 D. 120% 이상	12 10 8 6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평균율에 대한 당해업체 유동비율	10	A. 120% 이상 B. 80% 이상-120% 미만 C. 40% 이상-80% 미만 D. 10% 이상-40% 미만	10 8 6 4
다. 최근년도 매출액순이익율(당기순이익/매출액)	업종평균율에 대한 당해업체 매출액순이익율	10	A. 120% 이상 B. 80% 이상-120% 미만 C. 40% 이상-80% 미만 D. 10% 이상-40% 미만	10 8 6 4
라. 최근년도 총자산 회전율(매출액/총자산)	업종평균율에 대한 당해업체 총자산회전율	8	A. 120% 이상 B. 80% 이상-120% 미만 C. 40% 이상-80% 미만 D. 10% 이상-40% 미만	8 7 6 5

※ [주]

- ① 평가요소별 업종평균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종합)를 적용한다
- ②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를 적용한다
- ③ 업종평균율이 부(-)의 수치로서 심사대상자의 당해비율이 양(+)의 수치이면 최고점으로 평점하고, 심사 대상자의 당해비율도 부(-)의 수치이면 최저점으로 평점하며, 업종평균율이 양(+)의 수치이고 심사 대상자의 당해 비율이 부(-)의 수치이면 0점으로 처리한다. 매출액은 최근 1회계년도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적용한다.
- ④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항목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 분자별로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별표 1-4]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별표 1-5] <모든입찰공통>

Ⅲ. 신인도 : +13점 ~ -10점

1. 품질관리등 신뢰정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 점	등 급	평 점
가. 품질보증	품질, 규격등에 대한 인증	2	A. EM, GQ, 또는 ISO 국제품질인증 받은 자	2
			B. KS 또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이나 단체표준 규격인증을 받은자	1
나. 기술보유	기술인증	2	A. KT, NT, IT, 전력및건설신기술	2
			B. 특허, 실용신안등록 제품	2
다. 환경관리	환경오염 억제와 자원절약 기여	2	A. 환경표지 사용을 인증받은 제품(GR포함)	2
			B. 환경친화기업 지정자 또는 ISO환경 14000시리즈 인증을 받은자	1

Ⅱ. 입찰가격

1. 입찰가격 : 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 점	평 점
입찰가격	낙찰율	30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30 - 2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15점으로 평가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라. 사후관리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직	2	A. 당해물품의 사후관리(A/S)를 위해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기술자를 확보하고 있는자 B. 당해물품의 사후관리(A/S)를 위해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A/S망을 확보하고 있는자	2 2
마. 기타	조달구매 기여 또는 여성기업등	2	A. 물자사랑운동 수상자(조달청) B. 여성이 대표인 기업 C.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 (10%)이상률 구성하는 경우	1 1 1

2. 계약이행성실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납품지연	지체상금	-3	A. 최근 1년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자 <u>단, 단가계약의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u> -지체상금부과대상이 3건 이상일 경우 -3 -지체상금부과대상이 2건인 경우 -2 -지체상금부과대상이 1건인 경우 -1	-3
나. 노사협력 및 안전보건 관리관계	노사협력 우량기업 및 안전보건관리 초우량기업	2	A. 노동부장관(외국 업체의 경우 해당국 정부)으로부터 노사협력 우량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또는 안전보건관리 초일류기업으로 인증된 업체(유효기간내에 한함)	2

3. 계약질서 준수정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부정당업자	부정당업자 제재기한 만료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있는자	-5	A. 1년 이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만료후 제재 받은 기간에 해당하는자 B. 6개월 이상 1년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만료후 제재 받은 기간에 해당하는자 C. 3개월 이상 6개월미만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만료후 제재 받은 기간에 해당하는자 D. 3개월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만료후 제재 받은 기간에 해당하는자	-5 -4 -3 -2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나. 담합행위자	최근1년내 입찰및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이 있는자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2
다. 구매자 금융이용실적(환어음결제액)	상업어음 결제액에 대한 환어음 결제액 비율	3	A. 200% 이상 B. 100% 이상~200% 미만 C. 30% 이상~100% 미만 D. 30% 미만	3 2 1 0.5

※ [주]

- ① “1. 품질관리등 신뢰정도”의 “가, 나, 다, 라, 마”항의 각항 평점은 심사항목별 배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1. 품질관리등 신뢰정도의 “가, 나, 다”항의 각 인증서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또는 유사물품으로서 입찰공고시 정한 물품에 해당되는 경우이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 평가하되, 이행실적에서 평점을 받은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는다. 심사대상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항의 ISO국제품질인증은 9000시리즈중 9001, 9002 부문 인증의 경우만 인정한다.
- ③ “1. 품질관리등 신뢰정도의 마”의 적용대상은 정부조달협정 적용을 받지 않는 구매입찰에 한하며, 여성이 대표인 기업이라 함은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 ④ “3.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가”, “나”항이 중복될 경우 감점이 큰 점수만을 적용한다.
- ⑤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로 합제한 평점은 당해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인도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합계를 상제한 점수로 하되, 합계금액이 총배점한도 (+13, -10)를 초과할 수 없다.
- ⑥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

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며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당해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하되, 소숫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다만, 품질관리등 신뢰정도의 “마”항 “c”의 경우 공동계약입찰로 입찰공고하여 적격심사 대상자가 대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여성이 대표인 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10%이상)한 경우 또는 중소기업이 여성이 대표인 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10%이상)한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⑦ “3.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다”항은 당해업체가 거래은행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환어음 결제실적 및 상업어음 결제실적과 전국 은행연합회로부터 발급받은 당좌거래은행 현황자료에 의해 평가하며, 2000년 구매자 금융제도 실시일부터 2000년도 말까지의 실적을 2001년도에 반영하여 2001. 1. 1부터 적용하며, 그후는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한 실적을 익년도 1년동안 적용한다.

[별표 2]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 관련)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분 야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I 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1. 이행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	
	2. 재무상태	가. 부채비율 나. 유동비율 다. 순이익율 라. 총자산회전율	40	
II 입찰가격			50	평점산식 (별표2-1참조)
III 신인도	1. 품질관리등 신뢰정도	가. 품질보증 나. 기술보유 다. 환경관리 라. 사후관리 마. 기타	+13~-10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노사협력관계 및 안전관리		
	3. 계약질서 준수정도	가. 부정당업자 나. 담합행위자 다. 구매자 금융 이용실적		
IV 결격사유	1. 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서 부정당업자제재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30	
		나. 부도 또는 파산우려가 있어 당해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0	

[별표 2-1]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입찰>

II. 입찰가격

1. 입찰가격 : 배점한도 5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 점	평 점
입찰가격	낙찰율	50	※ 평점 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평점(점)

$$= 50 - 3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평가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붙임서식 1>

적격심사신청서

- 입찰 등록 번호 :
- 구매 관리 번호 :
- 입찰 대상 물품명 :
- 정부물품 분류번호 :
- 수 요 기 관 :
- 입찰 일 시 :
- 적격심사 신청구분 : ① 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제3조에 의한 종합심사 ()
 ② 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제8조 제1항에 의한 심사면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0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조 달 청 장 귀하

접 수 증

- | | |
|----------------|------------|
| 1. 구매 관리 번호 : | 3. 수요 기관 : |
| 2. 입찰 대상 물품명 : | 4. 제 출 자 : |
- 위건 물품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붙임서식 2〉(모든 입찰 공통)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구매관리번호	
입찰일시	
품명	
정부물품분류번호	
수량	
입찰금액	
추정가격	

2. 심사대상입찰자

업체명	(전화)
대표자	
업종구분	제조(), 공급(), 기타()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1)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구분	배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이행실적	10		
제조능력	20		
재무상태	40		
입찰가격	30		
신인도	+13~-10		
결격사유	-30		

(2)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구분	배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이행실적	10		
재무상태	40		
입찰가격	50		
신인도	+13~-10		
결격사유	-30		

〈붙임서식 3〉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서

납 품 내 용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물품입찰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조 달 청	
	사업의종류	제 조 (), 공 급 (), 기 타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품 명				실적구분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규 격 (품질, 성능등)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납품일자	단 위	수 량	납 품 금 액	비 고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② 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규격”란에 동 납품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③ 납품금액 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④ 조달청과 계약한 납품실적증명은 본 증명서 대신 붙임서식 4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로 대체함.

<붙임 5>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연 번	내 용	발 행 기 관 (확인기관)	비 고
총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붙임서식 1참조
	2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	붙임서식 2참조
이행실적	3	납품실적증명서 또는 납품실적확인서	납품기관(수요기관) 또는 조달청	붙임서식 3,4 참조
제조능력	4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재무상태	5	연번 4와 동일		
신인도	6	품질보증	관계기관 등	
	7	기술보유	특허청 등	
	8	환경관리	환경부 등	
	9	사후관리(A/S)	심사대상자	
	10	기타	조달청, 관계기관	
	11	입찰참가자격 제한업체	조달청, 각기관	
	12	지체상금 부과 처분 업체	조달청	
	13	노사협력관계	노동부 등	
	14	적격심사실적	신청자 또는 조달청	물품계약관련서류
	15	구매자 금융이용실적	한국은행, 은행연합회등	

※【주】

- ① 연번 6, 7, 8, 10, 13의 증명 또는 등록증등은 원본을 제시할 경우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동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 날인하여야 함.
- ② 연번 15의 증명은 원본에 의함
- ③ 적격심사면제 신청시는 연번 1, 3, 14의 자료를 제출함